

#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의무부담 동의안

의안 번호	348
----------	-----

제출년월일 : 2005. 10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정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소요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효율적인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민간자본 투자방식을 도입,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통해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 하고자
- 우리도 청주시,증평군,진천군의 하수관거정비를 국비 60%,지방비 40%(도비20%, 시군비20%)의 재원 부담율에 시설 준공후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의무부담 조건으로 하는 하수관거정비 BTL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의무부담액 : 94,428백만원(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 부가세 제외, 기본계획고시일 기준('05. 6.) 현재 불변가격 기준
- 채 권 자 : 사업시행자(민간 투자자)
- 채 무 자 : 주무관청(청주시,증평군,진천군)  
※환경부,충청북도 (국.도비 지원)
- 상환방법 : 시설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 자금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추정사업비	국 비(60%)	도비(20%)	시.군비(20%)
	94,428	56,958	18,735	18,735

##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무부담)

### ※첨 부

- 관련법규 사본 1부
- 정부지급금 산정·지급 방법 1부

# 하수관거정비BTL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 1. 사업개요

### ◦사업지역

- 청주시 : 청주시 탑동.영운동.사직동.봉명동.복대동.가경동 일원
- 증평군 : 증평군 증평읍 일원
- 진천군 : 진천군 덕산면.이월면 일원

### ◦추정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시 . 군	사업량(km)	사업비	사업기간
계	108	94,428	'05 ~ '08
청 주 시	47	45,710	'05 ~ '08
증 평 군	28	23,739	'05 ~ '08
진 천 군	33	24,979	'05 ~ '08

※ 전국 17개시.군, 1,204km, 1조원

## 2. 사업추진방식

- 정부고시에 의한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
- 기관별 역할분담 추진
  - 환경부 : 국고지원 및 사업추진 총괄관리
  - 도 : 도비지원 및 시행청(시.군) 관리.감독
  - 시행청(시.군) : 사업비 집행 및 위탁업무 관리.감독
  - 환경관리공단 : 위탁업무 수행 및 공사 관리.감독
- 하수관거 개.보수 BTL사업 추진시 인센티브 부여
  - 국고지원율을 신설사업과 동일하게 확대지원
    - 도청소재지 : 20% ⇒ 50%
    - 일반시 . 군 : 30% ⇒ 70%

## 3. 투자사업비 상환

- 상환조건 : 사업완료 후 20년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수익율 : 5년만기 국채금리 수준에 플러스 α
- 재원부담율
  - 도청소재지 : 국비50%, 지방비50%(도비25%, 시.군비25%)
  - 일반시 . 군 : 국비70%, 지방비30%(도비15%, 시.군비15%)

※ 연간 도비부담 예상액 : 20억원 정도(수익율 6%기준시)

## 붙임 1

### ※ 관련법규

#### □ 지방자치법

第35條 (地方議會의 議決事項) ①地方議會는 다음 사항을 議決한다

<改正 1994.3.16, 1999.8.31>

1.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豫算의 審議·확정
3. 決算의 승인
4. 法令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使用料·手數料·分擔金·地方稅 또는 加入金의 賦課와 徵收
5. 基金의 設置·運用
6.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重要財産의 취득·처분
7.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共施設의 設置·처분
8. 法令과 條例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豫算의 義務負擔이나 權利의 포기
9. 請願의 受理와 처리
10. 外國 地方自治團體와의 交流協力에 관한 사항
11. 기타 法令에 의하여 그 權限에 속하는 사항

## 붙임 2

# ※ 정부지급금산정 및 지급방법

### 1. 정부지급금의 산정

$$\circ \text{ 시설임대료}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 총민간사업비+건설이자+물가변동비
- 사업수익률 : 5년만기 국채금리수준에 플러스 a 추가
- 임대 기간 : 시설준공일로부터 20년(80분기)

### 2.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가. 지급시기 : 매분기말 지급을 원칙으로 함.

나. 지연배상금에 대한 규정

- 주무관청이 정부지급금을 실시협약에서 정한 기한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연배상금(3년만기 무보증회사채금리 AA-)을 지급할 수 있음

다. 지급주체 : 주무관청(청주시,증평군,진천군)

# □ 정부지급금 산정 예시 (수익율 6% 기준시)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계	204,546	9,924	9,965	9,992	10,017	10,046	10,060	10,090	10,122	10,154	10,188	10,222	10,257	10,295	10,333	10,372	10,413	10,457	10,500	10,546	10,593	
청주시	99,617	4,826	4,847	4,860	4,873	4,888	4,896	4,911	4,927	4,943	4,961	4,978	4,996	5,015	5,035	5,055	5,076	5,098	5,120	5,144	5,168	
증평군	51,190	2,486	2,496	2,503	2,509	2,516	2,519	2,526	2,534	2,542	2,550	2,558	2,567	2,576	2,585	2,594	2,604	2,615	2,625	2,636	2,649	
진천군	53,739	2,612	2,622	2,629	2,635	2,642	2,645	2,653	2,661	2,669	2,677	2,686	2,694	2,704	2,713	2,723	2,733	2,744	2,755	2,766	2,776	
부담비율	국비(60%)	123,260	5,982	6,007	6,022	6,037	6,054	6,062	6,080	6,100	6,120	6,140	6,160	6,181	6,203	6,227	6,250	6,273	6,301	6,326	6,354	6,381
	도비(20%)	40,643	1,971	1,979	1,985	1,990	1,996	1,999	2,005	2,011	2,017	2,024	2,031	2,038	2,046	2,053	2,061	2,070	2,078	2,087	2,096	2,106
	시군비(20%)	40,643	1,971	1,979	1,985	1,990	1,996	1,999	2,005	2,011	2,017	2,024	2,031	2,038	2,046	2,053	2,061	2,070	2,078	2,087	2,096	2,106

※재원별 부담율 : 청주시 - 국비(50%), 도비(25%), 지방비(25%).  
 증평군 - 국비(70%), 도비(15%), 지방비(15%).  
 진천군 - 국비(70%), 도비(15%), 지방비(15%).